
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93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31.

발 의 자 : 서미화 · 이성윤 · 김예지
김종민 · 김선민 · 이수진
이정문 · 용혜인 · 소병훈
최혁진 · 이학영 · 손 슬
전종덕 · 정태호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라 적절한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그 지원의 대상·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6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.

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학습과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교부·대여하거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보조기구 지원의 품목,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6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2015년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과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

를」이 제정되면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6조 및 제66조가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인용조문 및 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제3항 등).

법률 제 호
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3항 중 “「장애인복지법」 제36조”를 “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7조”로 한다.

제20조제2항 중 “「장애인복지법」 제66조”를 “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의료비지원) ①·② (생략) ③ 제1항의 의료비지원의 지원 대상·기준·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6조에 따른다.	제19조(의료비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7조-----.
제20조(보조기구지원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기구지원의 품목, 대상,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6조에 따른다.	제20조(보조기구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-----.